

가. 1차(감면) 학생 신청 : 2026.07.06.(월) 09시 ~ 2026.07.10.(금) 17시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장학>장학금신청>학생장학금신청

나. 신청 장학

장학금명	지급대상 및 기준			장학금액	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학업우수	-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(4학년은 15학점 이상) 이수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(복학자, 재(편)입학자, 징계해제자, 기타 학칙 위반자, 해당학기에 전과(부)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) - 학과의 선정기준(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)			최우수: 전액 우수: 60% 준우수: 30%	- STARinU 활용내역 통합정보시스템 탑재 -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,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장학>기초정보>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
	구분	학업성적영역	학과자율영역 (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, 외국어능력, 자격증 취득 등) 담임교수추천영역 (가정형편, 학업열의, 진로취업계획 등 반영)		
	반영비율	60%	20%	20%	
[학과자율영역]에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및 자율 배점 ※ 세부사항은 하단 내용 확인					
우수신입생	수시	우수	- 자기추천, 교과성적, 지역균형 최초합격자 중 계열별 상위 성적순 지급 - 계열별 대상자 선정 시 1개의 학과에서는 최대 1명만 선정 (단,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장학대상자 선발 가능) ※ 세부사항은 내부 방침으로 정함	등록금 전액	장학금 수혜 확인서(수시-우수/입학.단과수석장학금 수혜 내역)
			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	150만원	
	정시	수석	수시-우수(등록금성) 수혜자		
			-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17학점 이상(4학년은 15학점 이상) 이수하고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 - 자퇴·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전액반환(단, 사망제적 제외)		
			- 단과대학 수석 - 일반학생전형 최초합격자 중 지급 -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	등록금 전액	
			- 단과대학-수석(등록금성) 수혜자 -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17학점 이상(4학년은 15학점 이상) 이수하고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 - 자퇴·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전액반환(단, 사망제적 제외)	150만원	
			- 학과(학부·전공·모집단위) 수석 - 일반학생전형 최초합격자 중 지급	등록금 전액	

보훈		-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, 독립유공자 손자녀 - 제출서류 : (자녀 등)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, (본인)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-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※ 단,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, 학점 제한 없음 - 신(편)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	등록금 전액	-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배우자) -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/손자녀*) 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
한마음		[정규 학기] - 종합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* (구)장애등급 1,2,3급 -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 이상 - 신(편)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-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(2021년 1학기부터 적용)	등록금 전액	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(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1~3급))
		[8학기 초과자] - 종합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(구)장애등급 1,2,3급)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-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- 지급 기간: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-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	등록금 전액	
북한이탈주민		-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-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-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-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- 위 1, 2항 모두 충족		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자녀)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외국어 우수	A급	-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(iBT) 112점 이상 -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-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.0 이상 - 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등록금의 50% 지급	등록금 전액	- 공인영어성적표(토익/토플(iBT)) ※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장학>기초정보>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
	B급	-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(iBT) 105점 이상 -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-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.0 이상	등록금 50%	
고시(최종합격)	1종	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, 고등고시(입법, 법원, 행정), 공인회계사, 변리사 시험 합격자 -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 이상	등록금 전액	- 합격증 ※ 입학 후 취득
	2종	- 세무사, 관세사, 감정평가사, 노무사, 법무사 시험 합격자 -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 이상	등록금 50%	

간부	▪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(해양학과 학회장, 부학회장) ▪ 직전학기 평점평균 2.5 이상 · 선출직간부의 경우, 2.0 이상 (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) ▪ 신(편)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	학회장 등록금의 50%	• 간부 선발공문 (해양학과 학회장 및 부학회장) ※ 총학 및 단대 학생회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
		부학회장 등록금의 30%	
가족사랑	▪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(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) ▪ 직전학기 평점평균 2.75 이상 ▪ 신(편)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	등록금 50%	•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‘*’ 표시) ※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※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, 3차에(4월 중) 신청

다.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

- 1) 성적기준 : 직전학기 17학점 이상(4학년은 15학점 이상) 이수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
(단, 복학자, 재(편)입학자, 징계해제자, 기타 학칙 위반자, 해당학기에 전과(부)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가능)

2) 학과 배정 인원

학과(부)	1학년					2학년					3학년					4학년					합계				
	재학 인원	최	우	준	계	재학 인원	최	우	준	계	재학 인원	최	우	준	계	재학 인원	최	우	준	계	재학 인원	최	우	준	계
해양학과	31	1	2	4	7	24	1	1	3	5	33	1	2	4	7	30	1	2	4	7	118	4	7	15	26

3) 학과 선정 기준 (2026. 03.01.~, 영어를 제외한)

구분	학업성적영역	학과자율영역 (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, 외국어능력, 자격증 취득 등)	담임교수추천영역 (가정형편, 학업열의, 진로취업계획 등)
반영비율(%)	60	20	20

- 학과자율영역

- ① 전공학점 (10): 이수한 전공학점 (재수강, 전공기초 제외)이 10학점 이상일 경우 10점 배점, 그 이하일 경우 이수학점으

로 점수 배점

② 영어 (10): 반드시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영어성적표 탑재(해당자만)

※공인영어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중1 학기-3월1일, 2학기-9월1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

배점	TOEIC	TOEFL (iBT)	TEPS	IELTS	TOEIC SPEAKING	TOEIC WRITING	OPIC
만점	990점	120점	990점	9	200	200	AD
10	900	107	835	8	160	170	AD
8	850	100	763	7.5	150	160	IH
6	800	96	695	7	140	150	IH
4	700	82	577	6.5	130	140	IM
2	600	68	480	5.5	110	120	IL

- 담임교수추천영역

① STARinU (10): 역량진단 (5), 학업목표관리제(5) 참여에 따른 배점

② 상담 (10): 26-1학기 내 담임교수 상담 실시 후 담임교수가 배점

- 26.3.1.~ 현재까지 담임교수 상담 미실시 학생은, 담임교수님과 상담 후 신청기간 내 실시 후 STARinU에 상담 내역 입력 요청

※ 전과 신청자는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대상에서 제외

라. 외국어우수장학금

-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어학성적 제출

- 공인어학성적표상 유효기간이 추천기간 시작일 이후까지 남아있는 학생
 - ※ 예) 학과 추천기간이 2025.01.13. ~ 01.17.인 경우 유효기간이 추천 시작일(2025.01.13.)을 포함하여 그 이후까지 남아있는 학생
 - 유효기간 : ~ 2025.01.12. (X) / 2025.01.13. ~ (O)

마. 간부장학금

- 1차 추천 :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지 않는 간부장학생
- 2·3차 추천 : 1차에 미추천된 간부장학생
 - ※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경우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
- 장학금 수혜 후 학기 중간에 직책 수행을 종료할 경우(휴학, 자퇴, 제적 등) : 장학금 전액 반납
- 장학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휴학, 질병 등 부득이 직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: 수업일수 1/3선 이내 장학생 변경 (학생지원과에 변경요청 공문 발송)
 - ※ 선출직 간부장학금 8학기 초과자 지급가능(2018-2학기부터)

바. 가족사랑장학금

- 2명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, 학생신청일 기준 신청학생과 가족 모두 등록금을 완납하고 재학 중이어야 함
- 성적기준은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
-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 제출

사. 한마음장학금

- 제출서류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- 종합장애등급 :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(구) 장애등급 1, 2, 3급)

아. 유의사항

○ 감면 장학금 신청 전 확인사항

- 감면 장학금 승인 시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 반영되므로 부모님 회사 등록금 지원 여부 등 확인
- 감면 장학금 승인 후 **등록금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**
 - ※ 감면장학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, 장학금 포기신청서 제출

○ 교내장학금 감면.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
- 예1) 학업우수장학금 감면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외국어우수장학금으로 변경 불가